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의안 번호	6-229
----------	-------

제출일시 : 2012. 10

제 출 자 : 동두천시장

□ 개정이유

-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2012. 7. 19. 대통령령 제23963)됨에 따라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건축행정 사무를 건실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건축위원회 심의시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안 제11조)
- 나.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 건축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를 규정(안 제19조)
- 다.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에 대한 대상건축물 중 ‘요양원’을 ‘정신요양시설’로 변경(안 제28조)
- 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에 대한 대상건축물 중 ‘요양원’을 ‘정신요양시설’로 변경(안 제29조)
- 마.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안 제33조)
- 바. 이행강제금 부과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부과 금액 변경 (안 제36조)
- 사.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수시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안 제37조의2)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 예산수반상황 : 비예산사업

☐ 입법예고결과

○ 2012년 9월 4일 ~ 10월 4일

○ 건축위원회 김장중 의원 의견

- 건축조례안 제3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100분의 1’을 ‘100분의 2’로

변경

☐ 부서협의결과

○ 사회복지과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없음

○ 기획감사실 부패영향평가 : 의견없음

동두천시조례 제 호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회는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다음에 제2항을 신설한다.

제19조(건축허가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및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고 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 면적에서 제외한다.

제28조 및 제29조 중 “요양원”을 각각 “정신요양시설”로 한다.

제3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2.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제36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그 밖의 주거용 건축물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
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 영 제115조의2제2항 및 별표 15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3조에 따른 용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가표준액
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가표준액
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1호 및 2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제37조 다음에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② 영 제23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 ③ 제2항에 의하여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의하여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을 마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실·과		건 축 과
입 안 자	담당관·과 장 직위·성명	건축과장 장 경 원
	담당·팀장 직위·성명	건축팀장 박 홍 진
	담당자 성명·전화	주무관 최원석 (860-2392)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③ (생략) <u>〈신 설〉</u> 제19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제14조·제16 조·제19조·제20조·제83조에 따른 건축허 가·신고 및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28조(건축선으로부터 피어야 하는 거리) -----<u>요양원</u>----- 1.~3. (생략) 4.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③ (현행과 같음) <u>④ 위원회는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 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 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u> 제19조(건축허가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제14조· 제16조·제19조·제20조·제83조에 따른 건 축허가·신고 및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 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 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u>②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 또는 신고 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1을 따 른다. 다만,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 면적에서 제외한 다.</u> 제28조(건축선으로부터 피어야 하는 거리) -----<u>정신요양시설</u>----- 1.~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table><tr><td>대상 건축물</td><td>.....</td><td>.....</td></tr><tr><td>.....</td><td>.....</td><td>.....</td></tr><tr><td>.....</td><td>.....</td><td>.....</td></tr><tr><td>.....</td><td>.....</td><td>.....</td></tr><tr><td>묘지관련시설과 정신병원·<u>요양원</u>·격리병원·장례식장</td><td>.....</td><td>.....</td></tr><tr><td>.....</td><td>.....</td><td>.....</td></tr><tr><td>.....</td><td>.....</td><td>.....</td></tr></table>	대상 건축물												묘지관련시설과 정신병원· <u>요양원</u> ·격리병원·장례식장									<table><tr><td>대상 건축물</td><td>.....</td><td>.....</td></tr><tr><td>.....</td><td>.....</td><td>.....</td></tr><tr><td>.....</td><td>.....</td><td>.....</td></tr><tr><td>묘지관련시설과 정신병원·<u>정신요양시설</u>·격리병원·장례식장</td><td>.....</td><td>.....</td></tr><tr><td>.....</td><td>.....</td><td>.....</td></tr><tr><td>.....</td><td>.....</td><td>.....</td></tr></table>	대상 건축물									묘지관련시설과 정신병원· <u>정신요양시설</u> ·격리병원·장례식장								
대상 건축물																																								
.....																																								
.....																																								
.....																																								
묘지관련시설과 정신병원· <u>요양원</u> ·격리병원·장례식장																																								
.....																																								
.....																																								
대상 건축물																																								
.....																																								
.....																																								
묘지관련시설과 정신병원· <u>정신요양시설</u> ·격리병원·장례식장																																								
.....																																								
.....																																								
제33조(공개공지 확보) ①～③ (생략) ④ ----- 1. 용적률 완화 :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건축물의 높이 완화 :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의 1.2배 이하	제33조(공개공지 확보) ①～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2.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제36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																																							

현행	개정안
제36조(이행강제금) ① <u>법 제80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2분의 1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u> ② (생략) ③ <u>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100분의 1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u> <u><신 설></u>	<u>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그 밖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u> <u>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경우</u> <u>2.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u> ② (현행과 같음) ③ <u>영 제115조의2제2항 및 별표 15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법 제83조에 따른 용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u> <u>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u> <u>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1호 및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u> <u>제37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u>

현행	개정안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영 제23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을 마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